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66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민형배 · 김문수 · 이개호
양부남 · 이성윤 · 문정복
소병훈 · 조계원 · 김용민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 · 광역자치단체장 ·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부패방지교육을”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대면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위원장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대면(非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u>부패방지</u> <u>교육을</u>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u>소속 공직</u> <u>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u> <u>연 2시간 이상의 다음 각 호의</u> <u>사항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u> --- ----- -----.
<신 설>	1. <u>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u> <u>에 관한 사항</u>
<신 설>	2. <u>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u> <u>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u> <u>항</u>
<신 설>	3. <u>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u> <u>패방지에 필요한 사항</u>
<신 설>	② <u>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u> <u>따른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u> <u>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u> <u>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u> <u>며, 교육대상자가 고위공직자,</u> <u>신규 임용자, 또는 승진자 등</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u> <u>해당하는 경우 대면으로 하는</u>

②・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u>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u>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u>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위</u> <u>원장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u> <u>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u>비대면(非對面)에 의한 방법으</u> <u>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 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	---